

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7.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3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梁敬淑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議員 財務經濟委員會 梁敬淑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부모 등이 서울特別市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特別市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으로 하고,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하고, 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0회 임시회의 시 시민장학금 신설을 골자로 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시 市長이 정하기로 한 시민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범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례화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거주자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시민장학금에

있어서 일회적 성격인 입학금에 한하여 지급토록 한 것은 타 지역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同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은 大學校 附屬機關으로 사회복지관을 신설하여 동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지구내 신내4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토록 하려는 것이며, 95년 市立大 학부에 도시사회복지과, 도시행정대학원에 도시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었기에 市立大學校에서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신내4 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습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市立大學校가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을 신설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는 同改正條例案을 出席委員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이상

<p>거주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p> <p>제5조제1항중 “장학금”을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도서관 2. 박물관 3. 전자계산소 4. 학생보건소 5. 시청각교육원 6. 시민생활교육원 7. 사회복지관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9.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5時 41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의 黃仁明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仁明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財務經濟委員會 黃仁明議員입니다.</p>	<p>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同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은 소모품의 분류기준을 “耐用年數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인 물품”에서 “耐用年數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소모품의 가액기준을 상향 변경하려는 것입니다.</p> <p>이는 현재의 소모품의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p> <p>다음은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同 改正條例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조합이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이 제공한 금전으로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경우 市稅減免條例에 의거 市稅가 감면되고, 조합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할 때 地方稅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 한번도 과세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조합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배제하여 한번은 과세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p> <p>우리 委員會에서는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의 과정을 거쳐 改正條例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p> <p>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委員會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	---

<p>(參 照)</p> <p>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물품의 품종·상태 구분</p> <p>1. 물품의 분류</p> <p>가. 비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p> <p>나.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p> <p>2. 품종구분 기준</p> <p>가. 비품 (1)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p> <p>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p> <p>3. 물품상태 분류기준</p> <p>가.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p>	
<p>-----</p> <p>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중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p>	<p>서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위탁자인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직접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등기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병행함으로써 과세하는 때에는 조합원명의로 등기하는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미 조합 또</p>